

식품용 기구 관련 수입신고 Q&A

Q1. 식품용 기구는 어떤 제품들이 해당되나요?

A.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구’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으로 식기류, 조리용 전자제품, 식품포장지 원단, 식품과 접촉하는 부품 등이 해당됩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참고자료] 신고대상 식품용 기구 대표 사례

구분	참고사항
식기류(접시, 냄비, 숟가락, 젓가락 등)	
식품조리용 장갑(고무장갑, 라텍스장갑)	
제빙기	
조리용 기구(거품기, 와플제조기, 아이스크림 제조기 등)	
전기포트, 디스펜서(물, 음료 등)	
종이필터, 여과필터 등	「먹는물 관리법」상 정수기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전자렌지, 오븐 등	식품과 접촉하여 사용되는 부품이 포함된 경우
식품용 포장재	포장재 원단 포함
지퍼백	

Q2. 모든 식품용 기구 등은 수입시 수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용 기구 등을 수입하는 경우 매 수입시마다 수입신고 하여야 하며, 판매 이외에도 '자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외화획득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도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9] 중 '1.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3. 식품용 기구 등의 수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식품용 기구 등을 판매 등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등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 * 식약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https://www.foodsafetykorea.go.kr/> 접속, 왼쪽 위 '통합민원상담' 클릭) →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중 '수입식품 등 영업등록 신청'
- * 필요서류 등 관련 문의는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또는 식품안전관리과)로 문의

②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용 기구 등을 제조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 *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로그인 → 전자민원 → 민원안내 및 신청 →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

③ UNIPASS에서 수입신고서 작성 및 신고

- *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 * 수입신고는 해당 제품이 보세장치장 등에 입고된 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을 부착하여 신고하여야 함
- * 수입신고시 재질은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을 신고하여야 함

Q4. 인터넷 구매대행으로 식품용 기구 등을 수입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A.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가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용 기구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매 수입시마다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Q5. 식품용 기구 등을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처벌대상인가요?

A. 식품용 기구 등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법 제4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자가 수입신고 하지 않고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법 제29조 및 제3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 * (1차) 영업정지 2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
- (2차) 영업정지 3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
- (3차) 영업등록 취소 및 해당제품 폐기

【식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 또는,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를 방문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얻으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